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안내 자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유형)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22년 하반기부터)
- (현황) 전국 819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출장소 등 포함

구분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합계
개소수	184	241	36	241*	117	819**
비율	22.4%	29.4%	4.4%	29.4%	14.3%	100.0%

※ (지역별 분포) 서울 13.3%, 경기·인천 24.5%, 충청 13.3%, 대구·경북 11.8%, 부산·울산·경남 14.6%, 전라·제주 16.8%, 강원 5.6%

- (업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설명 및 작성 지원, 등록·변경·철회, 보존·관리, 연명의료결정제도 정보제공 및 홍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정의)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법정서식에 직접 작성한 것
- (요건) 1:1 대면상담, 본인이 직접 작성, 본인의 자발적 의사, 의사결정 능력 有, 충분한 정보와 그에 대한 이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 법적 설명사항 6가지 : ① 연명의료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② 호스피스 선택·이용,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효력 상실, ④ 작성·등록·보관·통보, ⑤ 변경·철회 가능, ⑥ 등록기관 폐업·휴업·지정취소에 따른 기록 이관

- 추가 설명사항 3가지 : ① 모바일·실물 등록증 발급 안내, ② 가족과의 공유 필요성 설명, ③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에서 조회되고 연명의료가 유보·중단됨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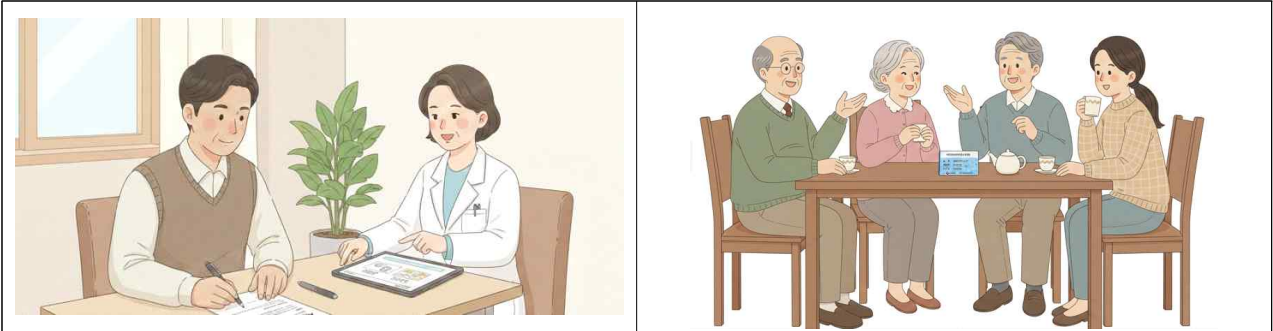
- (실적) 19세 이상 인구의 7.3%, 65세 이상 인구의 22.4% 작성(25.12월 기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등록건수	368,392	411,751	573,937	557,724	499,961
누적	1,158,585	1,570,336	2,144,273	2,701,994	3,201,958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이점

1.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주민 서비스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을 지역보건의료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여 지역 주민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향상
- (공공보건서비스 확대) 고령인구 대상 맞춤형 공공 서비스 확대 가능 및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국가 정책 수행 역할 강화



[관련지원사업] (인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사업(노인일자리)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 (원스톱 서비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외래 환자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
 - 한 기관 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연명의료 중단·유보까지 가능
- (환자 중심 의료 강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의향 확인 체계를 확보하여 말기·임종기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중증질환으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말기 이전이라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할 수 없는 환자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사전 돌봄 계획 (Advance Care Planning)** 수립 가능
- (환자가족 서비스 확대) 환자와 함께 내원하거나 면회를 오는 가족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 유형 확대

[관련지원사업] (인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사업(노인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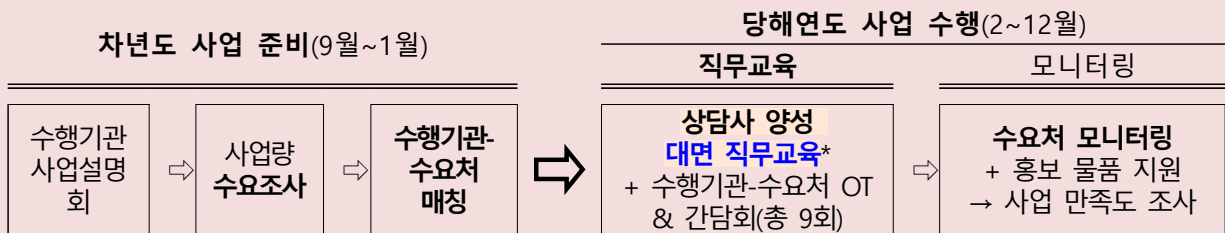
(예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 사업

□ **[인력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사업(노인일자리)**

- (대상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 (지원내용)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상담 지원 인력 운영 가능
 - 기관 운영 시 상담 인력 부담 완화
 - 참여 인력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지원되어 **기관의 별도 인건비 부담 없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배치되어 실무 및 행정 지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사업(노인일자리)**

- (사업주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업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업목적) 전문성과 생애경력을 갖춘 양질의 상담인력 확보, 동년배로서 효과적으로 상담,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무 이행
- (사업분류) 노인역량활용사업-노인적합형전문서비스-보건관리지원(B-09)
- (참여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자
- (활동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찾아가는 상담 포함),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및 캠페인, 제도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사업기간) 매년 2월 ~ 11월(약 10개월, 수행기관별 상이)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참여 시도	7개 시도	10개 시도	15개 시도	15개 시도	15개 시도
수행기관	11개소	30개소	60개소	70개소	80개소
수요처	15개소	33개소	70개소	85개소	98개소
참여자 수	105명	295명	675명	740명	925명
의향서 등록 건수	15,674건	54,650건	98,555건	112,239건*	-
상담사 1인 평균	149.3건	185.3건	146.0건	151.7건	-

* 2025년 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50만건)의 **22.5%**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록

□ **[예산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 (대상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 (지원내용) 운영지원 사업을 통한 예산 교부(지원) 및 컨설팅
 - 등록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을 활성화하는 데 동기 부여
 - 각 지역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권역별 거점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참여기관 현장 의견 수렴 및 지원 유형별·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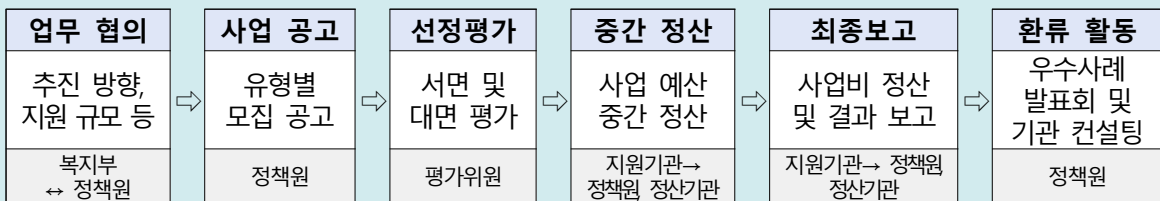
* 6개 권역 설정 : 경기·인천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제주), 경북권, 경남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 사업**

- (사업주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업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전국 확산 및 활성화, 등록기관 운영 안정화
- (지원대상)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노인복지관
- (지원규모) 보건복지부 예산배정에 따라 지원기관 개소 수 및 교부 금액 조정

구분 \ 유형	거점	우수	일반	신규	합계
2026년 개소 수	6개소	10개소	16개소	6개소	38개소
기관당 지원 금액	50백만원	25백만원	15백만원	10백만원	850백만원
기능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우수 운영모델 제시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인큐베이팅	

- (주요내용)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 운영비(인건비·일반수용비 등), 네트워크 활동(우수사례 발표회 및 간담회), 회계·행정업무 교육 등 지원
- (사업기간) 매년 3월 ~ 10월(약 8개월), 최종보고(11월), 우수사례 발표회(12월)



○ **2025년 주요 성과**

- (의향서 등록 건수 상승) 운영지원 사업 통해 62,366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 (대국민 제도 접근성 향상)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등록 49,954건
- (연명의료결정제도 고도화) 지원 유형별 맞춤형 밀착 관리, 현장의 문제점 파악·개선

2026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계획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적정 요건을 갖춘 신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계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 등록기관 지정 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아직 지정을 받지 않은 기관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차 지정	2차 지정
공고	2026. 2. 27.(금)	2026. 7. 31.(금)
신청 기간	2026. 3. 3.(화) ~ 3. 13.(금)	2026. 8. 3.(월) ~ 8. 14.(금)
서면심사및 현장점검	2026. 3. 16.(월) ~ 3. 27.(금)	2026. 8. 17.(월) ~ 8. 28.(금)
결과 통보	2026. 4. 1.(수)	2026. 9. 3.(수)
교육일	2026. 4. 8.(수) / 4. 23.(목)	2026. 9. 8.(화) / 9. 22.(목)
업무 시작일	2026. 5. 1.(금)	2026. 10. 1.(목)

* 2차 지정은 추후 일정 변경 가능

지정 대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지정 요건

-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시스템
-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전담인력



등록기관 지정 시 이점

지역보건의료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상담사 확보 가능 ('26년 98개소에 925명 상담사 배치)
- 지역주민 대상 공공서비스 유형 확대

의료기관

-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상담사 확보 가능
- 예산 교부 운영지원사업 신청 가능 (유형: 지정 2년 이내 신규 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와 병행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이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가능

노인복지관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상담사 확보 가능
- 예산 교부 운영지원사업 신청 가능
- 65세 이상 어르신 공공서비스 유형 확대

